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관내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1) 신축부분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우수등급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합계가 80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인 건축물.
- 2) 기존부분 :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나.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7조)

- 1) 신축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민간건축물은 기준 충족을 권장함.
- 2) 신축(증축, 개축을 포함한다) 공공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도록 정함(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이상으로 함).
- 3)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 기준”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도록 함.

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8조, 제11조)

- 1)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함.
- 2)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이용 합리와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함.

라.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제15조)

- 1)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정표지 제작·부착을 정함.
- 2) 민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업 참가 시 가점 부여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계획·설계·건설·유지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으로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에너지절약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설 및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2. “친환경 기준”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말한다.
3. “에너지 기준”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4.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이라 함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
5.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자치구·군 및 산하 공사, 공단을

포함한다)·중앙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건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말한다.

8.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₆) 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모든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중앙정부·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국무총리가 정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을 적용한다. 다만, 민간분양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제2장 신축 건축물 기준

제4조(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신축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건물 에너지 이용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축 공공건축물) ① 신축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신축(증축, 개축을 포함한다) 공공건축물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주택성능 등급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축 민간건축물) ① 시장은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심의기준 등을 작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증축, 개축을 포함한다)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7조(신축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① 시장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신축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세분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제3장 기존 건축물 기준

제8조(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공,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존 공공건축물)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직전 2개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당해년도 총에너지사용량을 직전 2개년도 평균

에너지사용량 이하로 유지하여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석유환산톤(「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하며 이하 “TOE”라 한다)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진단 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 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관리 부서장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존 민간건축물) ① 시장은 민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진단 결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 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기존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① 시장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기존 부문 인천광역시친환경·에너지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② 시장은 기존부문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세분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제12조(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표지) 시장은 인천광역시 친

환경·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인증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5장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14조(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시행에 의한 건물 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친환경·에너지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에너지건축물의 인증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에 반영한다.

제15조(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신축 및 기존부문의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로 인증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3.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4.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표지 부착
5.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알선
6.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친환경·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부문 에너지 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에너지 진단의 경우 1,000TOE 이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500TOE 이상 1,000TOE 미만은 2011년 1월 1일부터, 100TOE 이상 500TOE 미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법령	☐ 에너지기본법 - 제2조(정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조(정의) - 제12조(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 주택법 - 제21조의2(주택성능 등급의 표시 등) ☐ 건축법 -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제6조(인증등급)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 제5조(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에너지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

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 제8호 나목 내지 아목, 제9호 내지 제12호, 제19호 가목·나목·라목 내지 아목, 제20호 또는 제21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이하 "에너지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⑦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⑧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주기
20만 티오이 이상	1. 전체진단: 5년 2. 부분진단: 3년
20만 티오이 미만	5년

비고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주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분진단은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주택법 】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 성능, 홈네트워크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인정 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건축법 】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8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 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7>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소방 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7.7.24>

[본조신설 2006.1.6]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제6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등급은 최우수 또는 우수로 하며, 별표 8의 점수표에 따라 분류한다.

[별표 8]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6조 관련)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65점 이상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

제5조(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①인증은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한다.

②신청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따른 등급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급	총 에너지절감율
1	33.5 % 이상
2	23.5 ~ 33.5 % 미만
3	13.5 ~ 23.5 % 미만